

의안번호	제 326 호
의 결 연 월 일	2009년 3월 일 (제 278 회)

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09년 3월 10일

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침

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26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09년 3월 10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고등교육법(제14조 교직원의 구분)의 개정('09. 1.30)으로 전문대학 학교장의 명칭을 '학장' 대신 '총장'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**충북도립대학 학교장 명칭 변경 : 학장 → 총장**
 - 「충북도립대학」의 위상 제고와 학생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, 학교장 명칭을 '학장'에서 '총장'으로 변경
- **다른 조례 개정**
 - 충청도립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,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

5. 관계법령 발취 : 붙임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의 제목 “학장”을 “총장”으로 하고, 제16조 중 “학장”을 “총장”으로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「충북도립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5호, 제8조제2항, 제12조2항, 제16조, 제17조제1항, 제18조제1항, 제23조제3항 및 제4항, 제24조, 제27조제1항의 “학장”을 각각 “총장”으로 한다.

② 「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, 제2조제4항, 제5조 및 별표4 위임대상기관란 중 “충북도립대학장”을 각각 “충북도립대학총장”으로 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□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

현 행	개 정 안
제16조(학장) 대학에 학장을 두고, 학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·감독 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을 대표한다.	제16조(총장) ----- 총장 -----, 총장 ----- ----- -----.

□ 충청도립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1.~4.(생략) 5. 기타 대학의 운영상 도지사 또는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을 구하는 사항	제5조(기능) ----- -----. 1~4 (현행과 같음) 5. ----- 총장 ----- -----
제8조(회의) ①(생략) ②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도지사 또는 학장의 요청, 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	제8조(회의) ①(현행과 같음) ②----- ----- ----- 총장 ----- ----- -----.
제12조(설치운영) ①(생략) ②회계는 학장이 관리·운영한다.	제12조(설치운영) ①(현행과 같음) ②----- 총장 -----.
제16조(입학금 등 결정) 입학금, 수업료, 수험료의 책정은 학장의 요구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.	제16조(입학금 등 결정) -----, ----- 총장 -- ----- -----.

현행	개정안
<p>제17조(수업료 등 면제) ①학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학금 및 수업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.</p>	<p>제17조(수업료 등 면제) ①총장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18조(수수료) ①학장은 학사에 관한 각종증명을 발급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수수료의 징수는 "대학수입증지" 또는 "현금"으로 한다. ②~③ (생략)</p>	<p>제18조(수수료) ①총장 ----- ----- ----- -----. ②~③ (현행과 같음.)</p>
<p>제23조(기금의 운용관리) ①~② (생략) ③제2항의 효율적인 기금운용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분임운용관, 기금출납원을 두며, 기금 운용관은 학장으로 하고 기금 분임 운용관은 학생업무담당과장으로 하며 기금출납원은 학생업무 담당주사으로 한다. ④기금운용관과 기금분임운용관,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학장이 정하는 필요한 서류와 대장을 비치하고 관리·운용하여야 한다.</p>	<p>제23조(기금의 운용관리) ①~② (현행과 같음.) ③----- ----- 총장 ----- ----- ④----- ----- 총장----- -----.</p>
<p>제24조(장학금 지급) 장학금의 지급 범위, 대상자선정, 지급방법, 지급금액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.</p>	<p>제24조(장학금 지급) ----- ----- ----- 총장-----.</p>
<p>제27조(우수졸업생의 지방공무원 특별임용) ①학장은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7조제2항제2호의 특별임용 요건을 갖춘 우수한 졸업생에 대하여 도지사 및 시장·군수에게 지방공무원 특별임용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.</p>	<p>제27조(우수졸업생의 지방공무원 특별임용) ①총장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
관계 법령 발췌

【고등교육법】

제14조 (교직원의 구분) ① 학교에는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 또는 학장을 둔다.

【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】

제17조 (지방공립대학 등) ① 시·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대학과 전문대학 등(이하 "지방공립대학"이라 한다)의 조직과 분장사무는 시·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·도 규칙으로 정한다.